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8.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은 AI 전후방산업의 급격한 전환에 대비하여 관내 기업 간 협력과제를 발굴·지원하고 지역 내 공급망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중장기적인 제조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다)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8조

2) 필요성 : 협력과제 발굴, 컨설팅 제공, 과제 관리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 기업의 기술력에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 사무 내용 :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업무 전반

- 1)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평가, 대상기업 선정
 - 2) 과제 추진현황 수시 점검, 수행기업 결과 평가, 후속지원 연계 등
-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 마. 위탁기간 : 2027. 2.~12.
-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5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계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	비고
250	182	18	50	

-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추진계획(기업지원과-4630)
- 아. 위탁구분 : 신규

3. 부서 의견

-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다)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의회 동의 후 선정 심의 예정

라.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해당없음(신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보조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보육(단, 구체적 사항은 「구미시 중소기업 창업 지원 조례」에 따른다)
2. 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사업
3. 이차보전, 특례보증, 보증료 보전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4. 기술혁신 및 기술보호
5.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6. 스마트공장 전환 및 ESG 경영 지원
7. 교육·인력양성 및 컨설팅
8. 지역특화산업 육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

제1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위탁 시 사업
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구미시 기업지원사업 운영 요령에 따름)

가. 사업비는 연간 사업량 및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함

나. 인건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인원 및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사업비	182	182	182	182	182	910
	○ 간접비	18	18	18	18	18	90
	○ 인건비	50	50	50	50	50	250
	계	250	250	250	250	250	1,25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250	250	250	250	250	1,25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250	250	250	250	250	1,250

5. 부대의견 :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

6. 작성자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박지나(☎480-613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근 거
합 계	250,000	
사 업 비	182,000	· 협력과제 지원비 170,000천 원 - 양산 스프린트 100,000천 원×1건=100,000천 원 - 양산 스케일업 70,000천 원×1건=70,000천 원 · 전문가 활용비 1,500천 원×3회= 4,500천 원 · 회계감사비 1,000천 원×1회=1,000천 원 · 여비 10천 원×25회= 250천 원 · 사무용품비 250천 원×2회= 500천 원 · 회의비 250천 원×3회=750천 원 · 연구수당 5,000천 원
간 접 비	18,000	· 기관 공통경비 18,000천 원
인 건 비	50,000	· 참여직원 인건비 50,000천 원 - 참여인력(수석급) 1명×11개월×13% 참여율 15,000천 원 - 참여인력(선임급) 2명×11개월×29% 참여율 35,000천 원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권 미 영
	팀 장	공 민 정
	담 당 자	박 지 나 (480-6132)